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. 9. 22 선고 2020가단307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대중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

담당변호사 박종학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9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. 7. 1. 접수 제246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박하영

별지